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
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최도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991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5.

발의자 : 최도자 · 이동섭 · 주승용

김삼화 · 이찬열 · 이혜훈

권은희 · 손금주 · 임이자

박선숙 · 하태경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.

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임.

이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

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·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돋고 의료 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(안 제18조제1항제2호).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
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 중 “환자가족”을 “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배우자

나. 1촌 이내의 직계 존·비속

다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·비속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u><신 설></u>	<u>가. 배우자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1촌 이내의 직계 존·비속</u>
<u><신 설></u>	<u>다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</u>
	<u>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</u>
	<u>내의 직계 존·비속</u>
<u><신 설></u>	<u>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</u>
	<u>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</u>
	<u>형제자매</u>
② (생 략)	② (현 행과 같음)